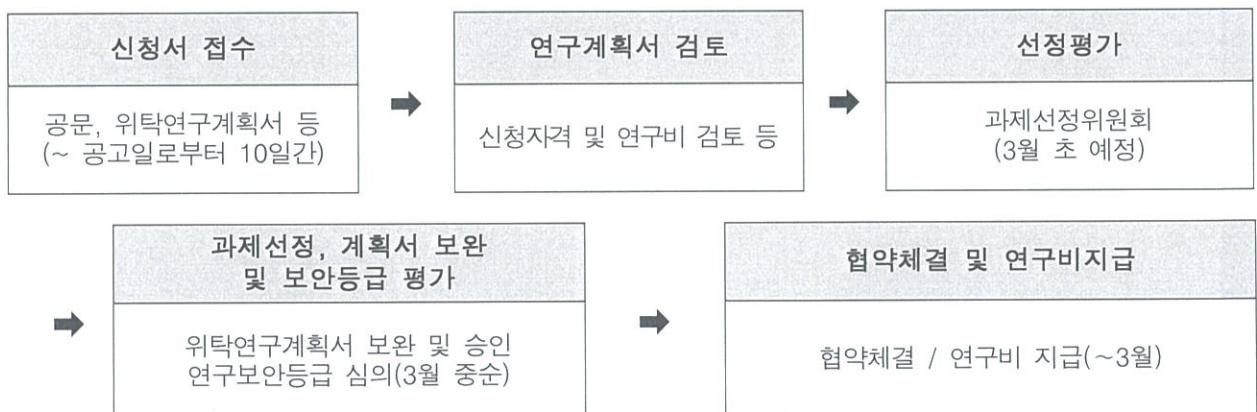


2017 기관고유사업 위탁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(안)

(17.02.21, 연구관리지원팀)

1. 과제 선정 절차 및 일정

- (선정방식)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를 충족하는 연구를 공개경쟁 실시
- (선정방법)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, 주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
- (평가방법)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프리젠테이션 평가
※ 발표 시간 등 세부 평가 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
- 주요 추진 일정
 - 공고일로부터 10일간 : 위탁연구 서류 접수
 - 3월 초순 ~ 중순 :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한 과제 선정 및 선정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심의
 - 3월 중순 ~ 3월 하순 : 협약 및 연구비 지급



※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2. 평가지표 및 항목

평가지표	평 가 항 목
연구목표 및 일정계획	실행과제 목표 및 과제추진계획서와의 연구기간 및 세부일정 부합여부
연구내용 및 연구범위	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과제 활용가능성
연구수행능력	연구책임자의 연구 수행 실적 및 신뢰도
	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(참여연구원 편성표의 적정성)
	연구수행환경의 적정성(연구시설 및 장비 등 보유 여부)
연구추진전략	연구 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여부
예상되는 연구결과	연구결과 활용 가능성
기타	연구비 편성의 적정성

3.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

- 위탁연구계획서 내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름
 - 인건비 : 전체 연구비의 30% 이내 사용(외부, 내부, 학생인건비 포함)
 - 간접비
 - 대학, 정부출연기관, 특정연구기관, 비영리법인 : 직접비의 17% 이내
 - 영리법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포함) : 직접비(미지급인건비, 현물, 부가세 제외)의 5% 이내
 - ※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%까지 계상가능
 - 부가세 : 포함

4. 연구결과보고 및 정산

- 최종보고서 제출은 협약시 상호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, 연구비 정산은 과제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 제출
- 잔액 확정 및 불인정액 회수

- 잔액은 연구비 정산 완료 후 반납
- 불인정금액은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불인정시 반납

5. 유의사항

○ 공통사항

- 발표평가기관, 최종 선정자 등 통보 안내는 신청자 이메일로 진행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
- 협약 개시일 :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한국뇌연구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름
-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'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비 집행 · 관리규정 이행 서약서' 제출
- 선정된 과제의 참여연구자는 '보안서약서 및 연구보안교육 수료증' 제출
-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

○ 위탁연구과제별 참고사항

RFP번호	참고사항	비고
RC01, RC03 RC04	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참여 가능	
RC07~RC08	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	
RC09	-	
RC12	평가 결과에 따라 총연구비 및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	